내용증명

발신인

성명:공매도

주소 :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494 （양평동）

전화번호 : 010-000-000

수신인

성명 : 정매수

주소 :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（신림동，서울대학교）

전화번호 : 010-000-000

제목: 매매대금 지급 청구

1. 귀하 （수신인，이하‘귀하’라고 한다） 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발신인은 2024.01.01 경 귀하에게 청소기（이하 ‘본 매매 목적물’이라 한다）를 매매대금 3,000,000원으로 정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（이하 ‘본 매매계약’ 이라 한다）을 체결하였습니다. 그리고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24.01.01 금 1,000,000원，중도금으로 2024.01.02까지 금 1,000,000원 및 잔금으로 2024.01.03까지 금 1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3. 이에，본인은 본 매매계약에 따라 2024.01.03 본 매매목적물을 귀하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.
4. 그러나 귀하는 약속한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위 계약금 1,000,000원을 본 발신인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.
5.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4.02.01 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（예금주: 공매도，입금 은행명: 책상 은행，계좌번호: 000-111-000）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

이 경우，귀하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，소송비 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.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 12%가 될 것입니다.

1. 뿐만 아니라，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，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매매대금으로 대출상환을 하여 했는데 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300,000만원이 발생함

**7.**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

명백한 미지급 매매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

**2024년 이월 15일**

**위 발신인**

공매도 （인）